# 47 플라스틱 가공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염성 피부염

성별	남성	나이	23세	직종	기능직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는 2016년 6월 1일에 □사업장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후가공팀 코팅 파트에 근로하여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도료를 기계에 보충하는 업무, 청소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16년 6월 15일 도료를 작업복 바지에 쏟은 뒤 바로 물로 세척하였고 사업 장에서 갈아입을 여벌 옷을 주었으나 재해자의 신체사이즈와 맞지 않아 도료가 묻은 작업복을 착용한 채 계속 작업하였다. 2016년 6월부터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수포가 발생하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피부염 상병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 도료가 작업복 바지에 묻은 상태로 작업하여 피부를 자극한 것이 원인이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어 2016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0월 17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016년 6월 1일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였고 후가공팀 코팅파트에서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는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도료를 기계에 보충하는 업무,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08시 30분~17시 30분이었으며 잔업 근무시에는 21시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입사 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받았다. 근로자는 불침투성 작업복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보호장갑을 사용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피부질환

### 4 유해인자

- 화학적인자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16년 6월 7일 사업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2016년 6월 15일 도료를 작업복바지에 쏟은 뒤 물로 씻었고 사업장에서 갈아입을 여벌 옷을 주었으나 재해자의 신체사이즈와 맞지 않아 도료가 묻은 작업복을 착용한 채 계속 작업하였다. 재해 후 따끔거리는 증상 있어 회사에서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진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17일부터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수포와 홍반성 구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 종합병원에서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감염성 피부염 상병 진단받았다.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7월 3일까지 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9일까지 외래 진료 수진하였고 현재는 진료 받지 않고 있다. 상병진단이전 2016년 1월 25일-26일 배와 목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았다.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 질환력은 없으며 알레르기 가족력도 없다. 흡연은현재 흡연자로 1일 10개피 3년간 흡연했다고 하였으며, 음주는 1달에 2회, 소주 1병을 마신다고 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16년에 입사하여 약 20일간 후가공팀 코팅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도료를 기계에 보충하는 업무,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도료에 포함된 크실렌, 이소프로필 알콜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는 도료를 작업복 바지에 쏟은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노출부위와 병변이 일치하는 점, 노출 중단 이후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병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이차적으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염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